

■ BIS, 은행 보유 암호자산에 대한 건전성 규제안 마련 ('21.6월)

예보제도연구팀 신배호 팀 장 (☎ 758-1024)
남성우 차 장 (☎ 758-1081)

□ **(개요)** BIS는 최근 암호자산(cryptoasset)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금융안정성을 해치고 은행의 리스크*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은행의 암호자산 보유와 관련한 건전성 규제안을 마련**

* 유동성 리스크, 신용 리스크, 시장 리스크, 운영 리스크(사기 및 보안 리스크 포함), 자금세탁/테러자금 조성 리스크, 법률 및 평판리스크 등

**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(BIS Consultative paper, '21.6월)

○ 규제안은 암호자산을 2개 그룹으로 분류*하고 특히 비트코인 등 2그룹에 대해서는 보유한 암호자산 가치만큼의 자본적립을 요구(위험가중치 1,250%) 하는 등 암호자산 보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

* **(1그룹)** 토큰화된 전통자산(Tokenised traditional assets) 혹은 스테이블 코인 등
(2그룹) 비트코인 등 1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

- BIS는 오는 9월까지 동 규제안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

□ **(건전성 규제안의 기본 원칙)** BIS는 아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규제안을 마련

- **(위험과 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)** 암호자산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과 동일한 위험과 경제적 기능을 제공한다면, 그 전통적인 자산과 자본, 유동성, 기타 요구사항 등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
- **(단순성)** 암호자산은 은행 보유자산 중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진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단순한 접근이 필요
- **(최소한의 기준)** 동 규제안은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규제기준이 될 뿐, 각 정부는 상황에 따라 보다 보수적인 기준(암호자산 보유 금지 등)적용 가능

□ **(암호자산 분류)** 암호자산 특성 등을 고려하여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

○ **(1그룹)** 아래 4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자산으로 토큰화된 전통자산*
(1그룹-a) 및 안정화 메커니즘을 가진 암호자산**(1그룹-b)이 해당

* 전통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대체적인 방법(분산원장 등)으로 기록하고 토큰화

** 전통적 자산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안정화 메커니즘을 통해 전통적 자산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암호자산 (스테이블 코인 등)

- ① **토크화된 전통자산** 혹은 전통자산의 가치와 상시 연결되어 있는 **안정화 메커니즘을 가진 암호자산**일 것
- ② 암호자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**모든 권리, 의무, 이익**은 발행(상환)된 관할 지역에서 **명확하게 정의되고 집행가능하며, 결제 완결성*이 보장될 것**
 - * 결제가 어떤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 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의 규칙 하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(settlement finality)
- ③ 분산원장이나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**암호자산의 기능과 네트워크는 중대한 리스크***를 **충분하게 완화시키고 관리가능하게 설계될 것**
 - *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암호자산의 이전, 결제, 상환 등 기능상 손상발생 등
- ④ 암호자산의 **상환, 이전, 최종적 결제를 실행하는 주체가 규제·감독 대상**일 것

○ (2그룹) 1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암호자산으로 비트코인 등이 해당

□ (자본 규제) 암호자산 유형에 따라 상이한 규제안 적용

① (토크화된 전통자산<1그룹-a>) 전통적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 규제 적용

- 다만, 잠재적 투자자 범위, 법적 확실성 등에서 전통적 자산과 리스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자본 요구 등에 대한 별도 검토 필요

② (안정화 메커니즘 적용 암호자산<1그룹-b>) 거래상대방 위험* 등을 반영하여 추가 자본규제 적용**

*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암호자산을 전통자산 등과 특정 비율로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거래상대방(redeemer)이 존재

** 다만, 매우 다양한 안정화 메커니즘이 있어 동 규제안에서 모든 형태를 다루기는 불가

③ (비트코인 등 암호자산<2그룹>)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암호자산의 경우 고유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자본 규제 적용

-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1,250%로 설정*해야 하며, 이는 최소 자기 자본비율(8% 이상)을 감안하면 보유한 암호자산 가치이상의 자본적립 필요**

* (산식) 위험가중치(1,250%) x max(|2그룹 롱 포지션 |, |2그룹 숏 포지션 |)

** (예시) 비트코인 100원 투자시 : 최소 100원(100원x1,250%x8%)이상 자본적립 필요

[참고] 국내 은행의 보유 자산별 위험가중치 현황					
구분	주식	펀드	대출자산	우량회사채	국채
위험가중치	250~400%	100~400%	100%이하	20~30%	0%

□ (유동성 규제) 레버리지·유동성 비율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은 미 제시

< 은행보유 암호자산 관련 건전성 규제 요약 >

건전성 규제	1그룹		2그룹
	토큰화된 전통자산(1그룹-a)	안정화 메커니즘 적용 암호자산(1그룹-b)	비트코인 등 1그룹에 속하지 않는 암호자산
자본 규제	최소한 전통자산에 준하는 자본 요구 (추가자본 요구 가능)	안정화 메커니즘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한 자본 요구 (추가자본 요구 가능)	롱/숏 포지션에 대해 1,250%의 위험가중치 를 적용
위험의 상대적 크기	underlying asset 위험	underlying asset 위험 + 거래상대방 위험 등	암호자산 고유위험 (underlying asset 없음)
유동성 규제 (레버리지비율, 유동성비율 등)	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규제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(기존의 규제를 활용)		

※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

- **(후속 조치)** 은행 및 감독기관에게 암호자산 관련 의무를 부여
 - (은행) 암호자산 분류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감독기관에 보고하며, 운영 및 사이버 위험, 암호자산에 내재된 기술적 위험,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사용 위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
 - (감독기관) 은행의 암호자산 분류기준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위험의 관리·측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, 은행에 필요한 조치*를 요구
- *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, 총당금 설정, 추가 자본비율 규제 등
- **(공시 관련)** 은행은 각각의 암호자산에 직·간접적 익스포져(장·단기 순 익스포져), 추가 자본 적립액, 회계 분류 등과 같은 정량적 정보 뿐만 아니라,
 - 암호자산 관련 비즈니스 활동 및 리스크 요인, 위험관리 정책 등 정성적 정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함
- **(시사점)** 은행의 암호자산 활동 관련 정보수집에서 더 나아가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, 향후 국내에서 관련 규제 도입 시 참고할 필요